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 적용을 변경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함.(안 별표)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내용 | 답변 내용 |
|--|-------|
| ○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이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함. | |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토론내용과 같음.

나. 찬성토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토론내용과 같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04조 규정”을 “제104조”로 하고, “사무 중”을 “사무 중에서”로 하며, “ [별표] ”를 “별표”로 한다.

제4조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을 “위임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첨부자료는 생략함(개정조례안과 같음).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344호 |
| 의결 년월일 | 2008. 12. 22. (제148회) |

제출년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 적용을 변경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함.(안 별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04조 규정”을 “제104조”로 하고, “사무 중”을 “사무 중에서”로 하며, “ [별표] ”를 “별표”로 한다.

제4조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을 “위임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동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p> | <p>제2조(위임사항) -----제104조-----사 무 중에서----- ----- 별표-----.</p> |
| <p>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p> | <p>제4조(권한의 행사) --조례에 따라 ----- -----.</p> |
| <p>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p> | <p>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 -----위임할 때에는 이 조 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 -----.</p> |

“별지”

[별표]

1.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 사항

| 실과 소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적용 | 수임기관 |
|-------|--|---|--|------|
| 감사실 | 1. 기강감사 | 가. 구 및 동에 대한 기강감사(정기 및 수시) | ·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제3항 | 구청장 |
| | 2. 구·동 공무원의 문책 | 가. 처분이첩, 자체조사 사항에 대한 문책 | ·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 |
| 총무과 | 1.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진보(직위부여권) 나. 5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진보(직위부여권) 다. 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근무성적 평정 · 경력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다만, 6급 및 7급은 가명부를 시명부에 통합함) · 징계집행, 직위해제 · 승급, 휴직, 복직, 면직, 겸임, 시보해제 ·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다만, 8급에서 7급 승진은 시장이 인원을 조정함) · 대우공무원 선발 마.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징계집행, 승급, 휴직, 복직, 면직 |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구청장 |
| 정보통신과 | 1.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및 10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검사신청서(설계도서 등) 확인 나. 현장방문 사용 전 검사 다. 검사필증 교부결정 라. 재검사 및 보완통보 마.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바. 검사장비 및 대장기록 관리 사. 사용 전 검사 결과 보고 아. 업무계획 수립 자. 사용 전 검사 수수료 징수 차. 그 밖에 사용 전 검사 관련 사항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구청장 |

| 실과 소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적용 | 수임 기관 |
|------------|---------------------------------|---|---|----------|
| 세정과 | 1. 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 가. 납세의 고지 나. 부과취소 및 변경 다. 납기 전 징수 라.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마. 가산금 및 독촉 바. 체납처분(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사. 결손처분(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아. 교부청구 자. 관허사업제한(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 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차. 징수유예 등(고지유예·분할고지·징 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 카. 파오납금의 처리(환부이자계산) 타. 소멸시효 파. 서류의 송달(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 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하. 공시송달 거. 징수촉탁(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너. 공탁(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 만원 이상 제외) 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납세자별 과 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러. 납세완납증명서 등 발급 며.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 「지방세법」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제26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0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같은 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 같은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 · 같은 법 제52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62조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같은 법 제39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구청장 |
| 농 산 지원과 | 1. 농지이용 상황 등의 검사·조사 | 가. 「농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의 검사 또는 조사 | · 「농지법」 제54조 | 구청장 |

| 실과 소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적용 | 수임기관 |
|---------|--|--|--|------|
| 주민생활지원과 | 1. 긴급복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현장 확인 및 사후조사 나. 긴급복지지원 | ·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및 제13조 · 같은 법 제8조 | 구청장 |
| 사회복지과 | 1. 외국인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외국인등록표 작성 및 관리 나. 체류지변경의 신고 | · 「출입국관리법」 34조 · 같은 법 제36조 | 구청장 |
| | 2. 행여사망자 장제비 지급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 |
| | 3. 수급자의 생계보조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8조 | |
| | 4. 보장비용의 징수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 |
| | 5. 수급(권)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수급권자 조사 나. 수급자 보호 및 관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같은 법 제26조·제27조 및 제30조 | |
| | 6.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사항 | 가. 의료급여증 발급 나. 의료급여증 변경 확인 다. 의료급여증 재발급 라.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 7. 장애인 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장애수당 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라. 장애인자녀 교육비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38조 | |
| | 8 장애인 의료비 | 가. 장애인 의료비 |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 |
| 가정복지과 | 1. 아동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공립·법인 및 단체 보육시설은 제외) | 가. 아동의 안전교육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보고(영유아 보육시설) 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다. 양자될 자의 자격증명 확인 및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 조사 | ·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구청장 |

| 실과 소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적용 | 수임 기관 |
|-------|---|---|---|-------|
| 가정복지과 | 2. 보육시설 중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 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법인 및 단체는 제외) | 가. 설치인가신청 나. 변경인가신청 및 수리와 결과보고 다. 폐지, 휴지의 승인 또는 신고 라. 폐쇄 등 마. 행정처분 등 바. 비용의 보조 사. 보고와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 ·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같은 법 제42조 | 구청장 |
| | 3. 노인보호 |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상담 및 입소 조치된 자의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28조 | |
| | 4.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노인복지회관 제외) |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폐지, 휴지신고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명령 라. 노인여가시설의 비용수납 및 청구 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보고 및 지도·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40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같은 법 제43조제2항 · 같은 법 제46조제7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
| | 5. 경로연금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연금의 지급 나. 부당이득의 환수 및 부정수급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 같은 법 제12조 | |
| | 6.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개장신고 나. 묘지의 일제조사 다.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라. 묘적부의 기록, 비치 마. 무연분묘의 처리 바.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허가 사.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아.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자.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4조·제15조 및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 제34조·제42조 및 제4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 실과 소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적용 | 수임 기관 |
|-------|--------------------------------------|---|--|-------|
| 가정복지과 | 7. 지역아동센터 신고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설치신고 나. 변경신고 및 수리의 경과 보고 다. 폐지·휴지의 신고 라. 폐쇄·행정처분 등 마. 비용의 보조 바. 비용보조에 대한 보고와 검사 | · 「아동복지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3조 | 구청장 |
| | 8. 장수수당에 관한 권한 | 가. 장수수당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6조 | |
| 문화예술과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나. 영업의 승계(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다. 폐업 및 직권말소(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라. 사후관리(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마. 허가취소 등(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사. 폐쇄 및 수거 조치(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아. 청문(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자. 과태료(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8조 | 구청장 |
| |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나. 신고증·등록증의 교부(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 | |
|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영화상영의 신고(영화상영관 및 비상설상영장에 한함)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등 다. 신고증 및 등록증의 교부(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라.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마. 영업의 승계(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바. 폐업 및 직권말소(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 같은 법 제58조 · 같은 법 제60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64조 | |

| 실과 소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적용 | 수임 기관 |
|------------|--|---|--|----------|
| 문 화 예술과 | | 사. 행정처분 등(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자. 폐쇄 및 수거(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차. 과태료(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 같은 법 제68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98조 | 구청장 |
| |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허가 및 신고 나.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 등의 취소 다. 관광사업의 양수 등 라. 등록취소 등 마. 폐쇄조치 등 바. 과징금의 부과 사. 청문 아. 보고 및 검사 자. 과태료 |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81조 | |
| 환 경 보전과 | 1.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관리대상업무: 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에 한함) | 가.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및 검사등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 「폐기물관리법」 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 같은 법 제68조 | 구청장 |
| | 2.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야생동물보호 단속 및 과태료 나. 야생동물 포획허가 다. 야생동물의 포획신고 라. 박제업 등록 |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 및 제7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같은 법 제19조 및 제2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30조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 신고(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한함)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

| 실과 소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적용 | 수임 기관 |
|----------|--------------------------------|--|--|----------|
| 청소과 | 1. 「폐기물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제2항에 한함) 나. 진공노면청소차 관리 및 운영 다. 환경기동반 운영 및 복무 관리 (노조사무 제외) |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 및 제11조 · 같은 법 제4조제1항 · 같은 법 제4조제1항 | 구청장 |
| | 2.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변경신고 등) 및 준공검사 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다. 기술관리인의 신고 및 가축사육의 제 한 등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바. 과징금 사. 청문 아.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 및 제15조 ·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 같은 법 제8조 및 제37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제36조 | |
| | 3. 공중화장실 관 리에 관한 다음 의 권한 |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 |
| 하수과 | 1. 지하수개발·이 용에 관한 다음 의 권한 | 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허가 및 신고 나. 굴착행위의 신고 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사후관리 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시정·조치·폐쇄 명령 | · 「지하수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 조·제13조 및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 조·제7조·제8조 및 제9조 · 같은 법 제9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 · 같은 법 제9조의5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구청장 |

| 실과 소별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적 용 | 수임 기관 |
|----------|-----------------------------|--|--|----------|
| 하수과 | | 마. 이행보증금 예치 바.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 사.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명령 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보고 자. 수질검사 차. 지하수 관련 출입검사 카. 지하수 관련 타인의 토지 출입 등 타. 지하수 관련 청문 파.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0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41조 | 구청장 |
| | 2. 소하천 점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나.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 다. 소하천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라. 법령위반자 및 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의 처분 마.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바.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자의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제18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 | |

| 실과 소별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적 용 | 수임 기관 |
|------------|------------------------------|---|---|----------|
| 하수과 | 3.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나. 타공사의 시행 다.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라. 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마. 재해시설의 설치 명령 및 공사승인 바. 점용허가 및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준공검사 사.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아.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자. 타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차.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 카. 일시사용 신고의 접수 타. 하수관거의 준설 파.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 | · 「하수도법」 제11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같은 조례 제15조 · 같은 조례 제15조 · 같은 조례 제15조 · 같은 조례 제3조 · 같은 조례 제4조 · 같은 조례 제5조 · 같은 조례 제10조·제11조 및 제14조 · 같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 구청장 |
| | 4.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 「하수도법」 제34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55조 | |
| | 5. 개인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나.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다.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라. 배수설비공사의 준공검사 | · 「하수도법」 제32조 · 같은 법 제2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 · 같은 조례 제7조 | |
| 수 도 시설과 | 1. 먹는물공동 시설의 관리 | 가. 약수터 유지관리 및 보수 | · 「먹는물관리법」 제7조 | 구청장 |

| 실과 소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적용 | 수임기관 |
|-------|-----------------------------|--|---|------|
| 도시계획과 | 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권한 | 가.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녹지지역 중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토석채취 제외) 나. 불법개발행위 등의 단속 다. 도시계획구역의 무허가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60조제3항 | 구청장 |
| | 2. 토지거래 규제 | 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용도별 면적 이하의 신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2항 | |
| | 3. 토지거래계약의 검인 | 가. 토지거래계약의 검인수리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 |
| | 4.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권한 | 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에 대한 매매자의 지정 및 통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4항 · 같은 법 제122조 | |
| |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권한 |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나. 토지이용계획 열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
| | 6.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등에 관한 권한 | 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등(조사 대상 필지파악,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지가산정자료 제출 등) 나.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산정지가 열람,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지가조사,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등) 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 접수·조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등) 라.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마. 개별공시지가 통지 바.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서 발급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공원녹지과 | 1. 녹지관리 | 가. 녹지의 관리(다만, 구 관할구역 내 녹지지역-공공공지, 완충녹지, 시설녹지 제외)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구청장 |
| | 2. 산림자원보호에 관한 권한 | 가. 임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허가·신고 나.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다. 입산신고 라.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 단속 마. 산림정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바. 부정임산물 몰수 사. 산불진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아. 산불예방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4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55조 · 같은 법 제79조 | |
| 건축과 | 1.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 가. 건축물 대장 작성 및 관리 | · 「건축법」 제29조 | 구청장 |

| 실과 소별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적 용 | 수임 기관 |
|-----------------|---|--|---|----------|
| 도로과 | 1. 도로의 공사와 유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 나. 도로의 공사(12m 이하 도로의 신설에 관한 공사) | · 「도로법」 제23조 | 구청장 |
| | 2.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가.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나.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 및 유지 | · 「도로법」 제29조 · 같은 법 제30조 | |
| | 3.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가. 도로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 「도로법」 제31조 | |
| | 4.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가.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 및 유지명령 | · 「도로법」 제33조 | |
| | 5. 비 관리청의 공사시행 | 가. 비관리청에 대한 도로 공사시행 및 유지허가 | · 「도로법」 제34조 | |
| | 6. 도로의 점용허가(굴착 및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 나.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 다.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라.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 마. 도로점용료의 감면 바. 도로점용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 · 「도로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
| | 7. 도로개설의 토지수용 또는 용(노폭12m 이하) | 가. 도로공사 시행 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 「도로법」 제48조 | |
| | 8.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 가. 필요한 장소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 · 「도로법」 제57조 | |
| | 9. 도로손que자 부담금의 징수 | 가. 도로손que자에 대한 수선 또는 유지비용 | · 「도로법」 제67조 | |
| | 10. 비관리청 시행의 공사비 부과징수 | 가. 비관리청 시행 도로공사와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 · 「도로법」 제79조 | |
| | 11.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대한 처분 | 가. 법령위반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효력의 정지, 조건변경,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 | · 「도로법」 제83조 | |
| | 12.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징수(구청장 위임사항에 한함)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리 | · 「도로법」 제94조 · 같은 법 제101조 · 같은 법 제101조 | |
| 재난 안전 관리과 | 1. 민방위기술지원대 | 가.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구청장 |
| | 2. 민방위대 정기검열 | 가. 민방위대 정기검열(미 위임직장대 및 지역대. 다만, 민방위대원 150인 이상 직장대는 제외)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
| | 3. 민방위 교육훈련 | 가.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 |

2. 부천시 사무의 동 위임사항

| 실과 소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적용 | 수임기관 |
|-------|-------------------------------|--|--|------|
| 시민봉사과 | 1.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에 관한 사항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다만,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출생, 사망신고를 하는 자에 한함)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 동 장 |
| 세정과 | 1. 해당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이자수입의 징수결정 나. 불용품매각대금의 징수결정 다. 과태료의 징수결정 라. 증지수입의 징수결정 | ·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 ·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동 장 |
| | 2.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 가. 지방세관련 제증명서의 발급 | · 「지방세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 |
| 사회복지과 | 1.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나.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 ·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 같은 법 제8조제1항 | 동 장 |
| | 2. 장애인 등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장애인 등록 처리 나. 등록 장애인 관리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 가정복지과 | 1. 장사 등에 관한 권한 | 가. 매·화장 신고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동 장 |
| | 2. 모자가정에 관한 권한 | 가. 모자가정증명서의 발급 | ·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
| | 3.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연금신청 접수 나. 이의신청 접수 다. 수급자관리(연금액 변경 및 중지, 전·출입 등) | ·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3. 시의회 사무국장 위임사항

| 실과 소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적용 | 수임기관 |
|-------|----------------------------|---|---|---------|
| 총무과 | 1. 소속공무원의 의회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 나.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연장 다. 지방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같은 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 의회 사무국장 |